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김 혜 정*

국문요약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이러한 정보를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비롯하여 특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등록·열람제도, 즉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될 성범죄 정보등록·열람제도의 목적을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재범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는 해당 범죄자가 형벌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그 결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취지 내지 목적은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살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정보등록대상자와 정보열람대상자를 차별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정보 내지 열람정보의 차별화 등 동제도의 목적에 보다 더 적합한 방향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전반적인 성범죄관련 법률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된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범죄가 높은 재범율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의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다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런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이러한 정보를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비롯하여 특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정부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정³⁾되었고, 이러한 청소년성보호법 상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을 모델로 동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⁴⁾

1)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성폭력범죄 (동종)재범자 수가 459명에서 2001년에 469명, 2002년에 778명, 2003년에 730명, 2004년에 527명으로 2004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년 이내 재범율이 2000년에 44.2%(203명), 2001년에 37.5%(176명), 2002년에 38.9%(303명), 2003년에 34.9%(255명), 2004년에 33.6%(177명)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528면, 2005, 558면 등 참조).

2)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문제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함께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31면.

이러한 신상공개가 그 주무관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여러 차례 실시되는 과정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비록 지난 200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등에 대한 판단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⁵⁾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에 쏟아지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부담이 현재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전면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면개정의 움직임이 이끈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이번 개정안에 나타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는 분명 종래의 신상공개제도에서 進一步한 부분이 발견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특히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 즉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문제로 국한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 정책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

II.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상황의 변천과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정당시부터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큰 변화라고 한다면, 2001년 5월에 일부개정이 있었고, 2003년 6월에는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여부와 관련하여 동법 제20조

4) 미국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창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법조 통권 제571호, 2004, 90면 이하;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 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350면 이하 참조.

5)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소년의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음란물 제작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히려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얼굴사진을 공개하는 등 신상공개제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⁷⁾에서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세부정보등록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세부정보등록 관련 벌칙조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규정들이 비례성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주요 법원칙을 위배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청소년위원회⁸⁾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05년 12월 29일에 고위험군의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진과 세부주소까지 공개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의 채택⁹⁾과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개정을 이루었으나, 2006년 2월 용산 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 등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일반적 개인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폐지 대신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제도의 도입·강화,

6) 문재완, 앞의 논문, 344면; 이경재, 앞의 논문, 31면; 안경옥,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2002, 6면 참조.

7) 이하에서 언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정은 2007년 1월 8일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면 이하 참조.

8)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로 개칭되었던 것이 2006년 3월 30일부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 이미경,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안) 검토의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6.7.20, 72면 참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부개정안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입법예고하면서 7월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아동 대상 성범죄들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잉의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부 조항의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30일 국회에 상정하여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¹⁰⁾되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2. 성폭력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시각의 모습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그 안에는 당연히 청소년의 성보호도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비단 유교문화적 관점에서 정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무리 필요하고 또 좋은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의 인권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춘 법조인과 학계의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문제제기¹¹⁾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권리의 보편성과 일반성이 아직까지도 남성중심적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돌아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 함부로 피해사실조차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10) 제268회 제9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8면을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기존의 치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청소년 대상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그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공익과 범죄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관한 공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 위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분했고 그에 따라 법률에서 신상정보의 열람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으로 수정의결”하였다고 한다.

11) 이미경, 앞의 논문, 71면 참조.

포함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인권침해로 단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¹²⁾도 당연히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형벌 그 자체가 또 다른 침해요 해악이라는 점에서 형벌의 최후수단성 내지 형법의 보충성 더 나아가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 등과 같은 형법기본원칙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성폭력과 관련하여 ‘폭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폭력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비단 유형적인 폭력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입각한 우리사회의 정서에 의하면 평등하지 않은 관계구조 안에서의 무형적 폭력도 유형적 폭력행위 못지않게 중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 경우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성관계라고 하여도 소위 성별 위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불균등한 권력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동의라는 점에서 이미 그 안에 폭력이 내재된 것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폭력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¹³⁾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라는 개념은 구별의 실익이 없어지게 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성과 관련된 범죄는 - 필자의 지나치게 극단적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 폭력이 내재된 범죄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기초하는 형법에서도 이러한 넓은¹⁴⁾ 폭력개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사회적 의미와 형법적 의미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정부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정되다보니, 청소년성보호법에서

12) 이미경, 앞의 논문, 72면 참조.

13) 김신현경,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44면(55면) 이하;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6면 이하 참조.

14) 여기에서 “넓은” 폭력개념은 일반적으로 형법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광의의” 폭력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규정하는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개념으로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성범죄’라는 개념과 ‘성폭력범죄’라는 개념¹⁵⁾을 同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죄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¹⁶⁾라고 한다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그밖에 성풍속에 관한 모든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성범죄의 범주 안에는 성폭력범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성범죄와 성폭력범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 행위¹⁷⁾와 강간 등의 성폭력행위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단순 성매매와 관련한 형사정책의 방향¹⁸⁾과 성폭력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성폭력행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폭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에 관련된 범죄는 외형적인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성폭력이라고 이해하는, 즉 폭력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가형벌권이 그렇게 넓은 개념을 전제로 발동된다면, 소위 형법의 보충성 내지 형벌의 최후수단성의 기본원칙은 형해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15) 청소년성보호법이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사용한다면, 그 개념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 이미경, 앞의 논문, 73면 참조.

16) 물론 이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비단 유형적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침해의 유형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7) 폭력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혹은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의미는 자율적인 동의에 의한 성매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8)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으로는 형사법적 제재부과에 앞서 사회환경의 개선 내지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점에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번 개정기회에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차별적인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⁹⁾

Ⅲ. 전부개정법률안에 나타난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개별적 검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범죄방지 제도 목적으로 관보 내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종래의 신상공개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오던 상황에서 종래의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범죄자의 정보등록·열람제도를 도입한다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래에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의 목적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될 성범죄 정보등록·열람제도의 목적을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재범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다.²¹⁾ 이는 해당 범죄자가 형벌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그 결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19) 이러한 문제는 앞의 주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68회 제9차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20) 2007년 1월 8일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면 참조.

21)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2007/4, 25면 참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취지 내지 목적은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살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난 4월 27일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되어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범죄자위치추적법’이라 함)’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법은 보호대상이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또 성폭력범죄자로 제한되어 시행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제한되면서, 또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 법률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컨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신상공개대상자가 되고 그와 함께 형을 마친 후에는 최장 5년 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 대상자는 하나의 범죄에 의해 3가지의 다른 제재를 부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과잉처벌 내지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하나의 범죄에 형벌, 전자감독, 신상공개가 병과 되는 부담을 우리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급해지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범죄자에게 전자감독과 신상공개를 부과하는 대신 가벼운 범정형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번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에 발생한 용산 신발가게 주인의 초등학생 성폭행 후 살해 사건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 의한 범죄로 범인은 당시 5세 유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현행 제도에 의하면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바, 제도의 취약점을 가장 잘 드러내 사건”이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기보다는 현행 형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강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로 처벌되는 등 종래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²²⁾ 및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이해하는 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용산 어린이성폭행살인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규제내용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개정취지의 설명에서는 개정의 근거로 대부분 성폭력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설명되어지고 있어, 결국 성폭력범죄에 대한 논거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의 근거로 설명함으로써 이번 개정취지를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며, 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타 법률과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제도의 목적이 어떤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보다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등록·열람제도의 법적 성격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상공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신상공개가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외형상으로는 행정법상의 공표와 유사하지만,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점에서 그리고 공표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방지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함으로써 제도나 정보제공보다는 주로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기대²²⁾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형벌 내지 보안처분적 성격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법익박탈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법익의 박탈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보안처분은 형사적 사법처분²⁴⁾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

22)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별법 등 일부 법률에서 이미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과 관련한 구성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와 함께 형법의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헌법재판소 2003. 6.26. 선고 2002헌가14 위헌의견 참조.

24) 이형국, 형법총론, 1996, 491면.

이 행하는 신상공개를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까지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²⁵⁾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라는 견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예를 박탈·제한하는 형사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관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⁶⁾

그런가하면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정)법원은 형벌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²⁷⁾ 헌법재판소는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형벌 내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사실 신상공개가 형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확립된 기준은 아직 없다고 보인다. 다만, 그 입법의도가 무엇이며 신상공개가 공대대상자에게 초래하는 직·간접의 효과를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²⁹⁾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범죄사실 등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누구라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때에는 자신의 신상도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 기능과 행위당사자에게는 특별예방적 기능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형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수단인 보안처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이처럼 지금까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법률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대상자

25) 이경재, 앞의 논문, 42면 이하 참조.

26) 오영근, 형법총론, 2005, 753면.

27) 서울행정법원 2002. 7. 19 선고 2002아15.

28) 권창국, 앞의 논문, 101면; 문재완, 앞의 논문, 366면 이하; 심희기,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위헌성”, 법률신문 제3219호, 2003.11.10 참조.

29) 심희기,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95면 참조.

30) 서울행정법원 2002. 7. 19 선고 2002아15; 이경재, 앞의 논문, 42면 이하;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217면 이하 참조.

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제3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신상정보열람대상자를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는 사법판단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로써 형사재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신상공개를 사법판단이 아닌 행정판단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³¹⁾ 그런데 개정안에서 재범위험성이라는 요건심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안 제32조 제1항에서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등록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에 정보열람대상자로 “1.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다만, 유죄판결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과 피해 청소년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동기, 성범죄전력의 유무 및 각 성범죄전력 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높아 등록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다분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에 보안처분이라는 법적 성격을 인정하게 된다면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³²⁾

생각건대 성범죄자의 정보등록·열람이 개정법률안 제32조 및 제38조에서 법원의 판결로써 허용되는 기본적인 방침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31) 보안처분은 형벌 못지 않은 중한 형사제재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로서의 범죄행위와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보안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줄고,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474면 이하 참조.

32) 같은 취지로 이경재, 앞의 논문 45면 참조.

보나, 다만 그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책임에 입각한 형벌을 부과 받고 그에 더하여 추가재제로써 신상공개를 부과 받는다면 그 대상범죄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등록제도와 열람제도의 구별을 전제로 한 대상자의 범위설정

이번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취지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에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자를 등록 및 열람 대상자로 하였던 것이 등록·열람 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32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³³⁾ 물론 제32조 제2항에서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2가지 점에서 의문이 든다.

먼저 여기서 유죄판결이라고 하면 그 범주에는 중한 범죄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미성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것이 타당한 개정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최근 발생하는 재범이 죄의식이 희박한 벌금, 집행유예 중 경미한 처벌을 받은 자들이 주로 행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현재는 이들을 등록대상자로 포섭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확대한 것³⁴⁾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개정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청소년대상성범죄라 할 때, 개정법률안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그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열람대상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법률안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13세 미

33) 국가청소년위원회, 앞의 자료, 25면 참조.

34) 국가청소년위원회, 앞의 자료, 25면.

만의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광범위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라는 포괄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에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굳이 보안처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사실 신상공개는 그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가 발생하여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연좌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신상공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중범죄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³⁵⁾ 무엇보다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범죄방지효과가 지금까지 크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방지효과가 달성될 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범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문이다.

특히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와 열람대상자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거의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왜냐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이 될 것이고, 이 경우 이미 형사처치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등록된 정보는 결국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거법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³⁷⁾

35) 안경옥, 앞의 논문, 22면 참조.

36) 같은 취지로 김태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열람제도에 대한 검토”, 청소년성보호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 2007. 4. 19, 2면 이하 참조.

37) 범죄자에 대한 자료수집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청, 검찰청 및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관리하는 전과제도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위헌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태명, 앞의 논문, 2면 참조). 특히 최근에는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으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제도화되지 않았던 범죄자의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의 경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치르고 난 개인의 신상이 열람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형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등록보다는 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제도가 보안처분이라는 제재적 성격을 명확하게 갖게 되면서 행위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을 마치고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제재라는 관점에서 중한 범죄에 한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신상정보열람을 통해 범죄방지라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신상공개가 낙인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과잉처벌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 성매수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열람은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를 범죄의 경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모든 유죄판결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성매매의 경우까지도 정보등록·열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신상공개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신상공개를 살펴보다라도 중한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³⁸⁾에서도 우리 등록·열람제도의 포괄성에 대하여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³⁹⁾

가 공동으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지난 2006년 8월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인 것으로 안다(의안번호 174668 참조).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도 이미 형사소송법 제81조의g에 유전자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38) 미국의 매진법에 대한 합헌판결에서 위험입장을 밝힌 긴스버그 대법관과 브라이어 대법관의 논지에서와 같이 신상공개가 현재의 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범죄 사실만으로 의무가 부과되면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재범가능성보다는 과거 범죄의 경우에 따라 보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문재완, 앞의 논문, 360면 참조).

생각건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등록제도와 열람제도를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방침에서 특히 열람의 경우 중한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단순 성매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하는 수단이 가지고 있는 해악성 내지 침해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등록·열람정보의 범위의 차별화

개정법률안 제33조와 제38조에 등록·열람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33조 제1항에 등록을 위한 신상정보로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열람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는 제38조 제3항에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성범죄 경력”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정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을 위하여 수사기록에 기록되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등록대상 정보는 결국 관계 공공기관에서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을 유죄의 판결을 받은 대상자라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기록화 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명확한 관리주체의 선정과 정보의 오·남용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확고히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등록정보는 제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예컨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제도의 목적과 큰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만약 등록대상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자신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정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선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 제33조 제1항에 보면 법원으로부터

39) 권창국, 앞의 논문(2001), 216면;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호, 2000, 28면 참조.

등록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스스로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집행에 어려움 내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집행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⁴⁰⁾

그러나 열람대상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대상 정보와는 달리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먼저 대상자의 성명, 사진, 범죄경력 등은 제도의 목적 상 요구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파악하는 것이 열람자의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의문이다. 대상자의 연령 혹은 출생연도 정도를 파악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주소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은 사회안전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요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지나치게 세부적인 주소를 적시하여 오히려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반인권적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단위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열람권자에 대한 관리문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열람권자를 피해자와 그 보호자, 교육기관의 장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성범죄자 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강화라는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열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⁴¹⁾ 그에 따라 개정법률안 제38조 제2항에 “1.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2.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3조 제1항 각 호⁴²⁾에 따른 청소년

40) 김태명, 앞의 논문, 5면 이하 참조.

41) 국가청소년위원회, 앞의 자료, 27면.

42) 제43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청소년대상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등록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법률안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근거로 열람권의 확장과 관련하여 열람권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여부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전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비밀준수의무는 개정법률안 제41조에서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있을 뿐, 제38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열람한 사람이 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제38조 제2항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는 상실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소위 알권리와의 충돌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열람권자에 대한 일정부분에서의 비밀준수의무부과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열람 대상자의 결정을 법원이 판결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상공개가 공개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람자에 대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고, 자칫 무차별적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으로 본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만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청소년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IV. 맺음말

이상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중 등록·열람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가 궁극적으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자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의 도모라는 관점에서 일보 양보하여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교정정책의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신상공개는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결국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신상공개가 재범방지적 효력보다는 오히려 처벌적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성폭력범죄의 대응수단으로써 미국의 신상공개는 실패한 형사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등록대상자 중에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파악이 안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신상공개 대상자가 공개로 인한 심적 부담이 동기가 되어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거나 혹은 일반시민들에 의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또 다른 대응수단으로 현재 평생동안 전자위치추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국가적 제재는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여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범죄의 특성상 장·단기의 사회정책적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1월 8일자 결정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2007/4.

권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권창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법조 통권 제571호, 2004.

김신현경,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김태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열람제도에 대한 검토”, 청소년 성보호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 2007.4.19.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 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심희기,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안경옥,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2002.

오영근, 형법총론, 2005.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이미경,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안) 검토의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6.7.20.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호, 2000.

Überprüfung über das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s der Sexualkriminaltätern

Kim, Hye-Jeong*

Heutzutage passieren viele Sexualkriminalitäten in Korea. Dazu ist es noch schlimmer, dass diese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Außerdem steigert sich der Prozentsatz der Rückfälligkeit der Sexualkriminalität immer hoch.

Im Jahr 2000 wurde das ‘Gesetz über den Sexuelschutz der Jugend’ festgesetzt, um die Tat des Kaufs für den Geschlechtsakt mit der Jugend zu bestrafen. Auf diesem Gesetz kann Government Youth Commission entscheiden, ob eine persönliche Auskunft der Erwachsenen, der für Geschlechtsakt mit Jugend das Geld ausgibt, veröffentlicht wird.

Aber dieses System der Veröffentlichung der persönlichen Auskunft wurde geschätzt. Darauf vorschlägt Government Youth Commission ein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 Aber zuerst ist es notwendig, dass das geltende Strafrechtssystem noch rationaler reformiert wird. Danach kann untersucht werden, ob wir ein neues Sentionssystem einnehmen müssen.

주제어 :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 정보등록·열람제도, 성매매, 성폭력범죄, 국가청소년위원회

Keywords : Sexualkriminalität, Eintragungssystem, Durchsichtssystem, Government Youth Commission, Gesetz über den Sexuelschutz der Jugend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Younghan University, Ph.D. in Law